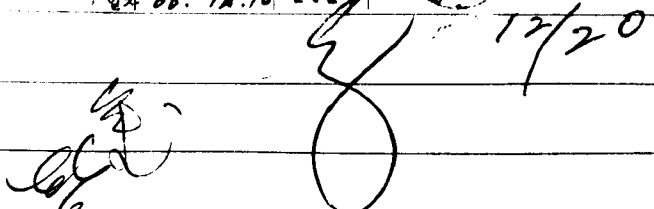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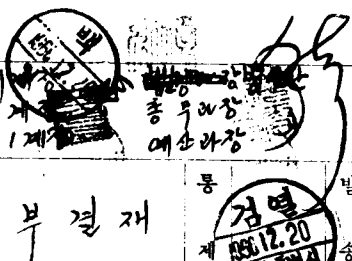


1214호

고 고	문 기 호	서 재 번	기 안 용 치		전 결 규 정	조 항
	문 사 번 호	12642 ~ 75	(천 화 번 호)			장 권 결 사 함
	서 리 기 한		기 안 자			
	행 일 자		결 재			
	보 조 년 한		결 재 일 자			
보 조 기 관	제 1 부 서 장					
	재 무 장					
화 확 명 인 무	관 재 장					
	나 장 장					
	재 산					
	리 보 계 장					
수 참	주	법 제	총 무	심 사	회 계	
	유 신 조	내 부 결 재	제	발	정	과 대 장 정 리
	제 목	불응청소차량공매취분				
<p>1. 1966. 9. 29. 불응결정된 전개차량 26대를 지방 재정법 제 5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매취분코리 합 나다.</p> <p>가.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함 나. 공고방식 ; 별지공고안을 2개 신문에 공고함 다. 공고제재기간 ; 1966. 11월 1일 간 라. 공고소은액 ; - 금 100만원 (100원 x 1000개) x 2 = 200,000원</p> <p>마. 응고신문 ; 공보실에서 지정함</p>						

63

바. 지출 과목 ; (반) 재무비 (세항) 재산관리비 (부) 수수료 및 수선비

사. 지출방법 ; 공고 신문 첨부 청구에 의하여 직불함

우첨

- 1. 공고 안 1부
- 2. 계약서안 1부
- 3. 불응청소하장 명세 1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6 호



불용차량 매각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 52 조 규정에 의거 일반공매함.

1.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2. 입찰일시 1966. 12. 14. 14.00
3. 입찰종류 1966. 12. 14. 12.시 까지 시세, 국세 납세필증을 구비하여 당시 재무국 관재과에 등록하여야 함.
4. 재산설명및증랍 1966. 12. 14. 14.00 당시 증랍등 게재장고에 집합하여 현증랍과 동시에 설명함.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현금 또는} 시중은행 보증수표로서 동봉 입찰하여야 함.
6. 개찰장소및일시 입찰장소에서 집행관이 예고함.
7. 매각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 이상 정기예금을 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요체결하여야 함.
낙찰자가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후 10 일 이내에 매매물건을 당시 관계관 지시속에 ^{완전히} ~~완전히~~ ^{정당한} ~~정당한~~ ^{방법} ~~방법~~ ^{으로} ~~으로 ^{처리} ~~처리~~ ^{하여야} ~~하여야 ^{함.} ~~함.~~~~~~
8. 계약조항과 재산목록 당시 관재과에 공시하고 있으니 상세한것은 이곳에 문의하시라
9. 차량의 표시
차명 F.M.C 년식 1945 의 25 대

위 공고함.

5-3

1966. 12. 14. 서울특별시공공주택관리공단 234

64

매매 계약서



1. 물건의 표시

별첨과 여함.

2. 매도대금 인금

위표시 물건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 서울특별시장을 갑이라 정하고 매수인 을 늘이라 정하여 하의 소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은 매도물건의 완전전적부에 반환하기로 한다.

제 2 조 을은 매도대금을 196 년 을 일까지 갑에게 완납 하여야 한다.

제 3 조 매도대금 금액을 영수증 동서에 위 물건은 을의 소유로 간주 한다.

제 4 조 을은 위 물건에 대하여 매도대금 완납후 일이내어 갑의 지시에 따라 매도물건을 절단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건의 진단과 철거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6 조 을이 제 2 조의 기한내에 대금을 완납치 않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을이 제 2 조을 위약 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의 소득으로하며 이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한다.

제 8 조 본건 재산 매각에 관하여 별의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의 증정에 따르기로 한다. 위 계약을 승하기 위하여 본 승서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서기 1966년 을 일

매도인(갑)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매수인(을)

5-4

65

235



불용심소차량명세

구차량번호	차명	년식	기관번호	차대번호
서울관 1223	지.업.사	1945	SL-45-C-G-011051	SL-45-C-011051
" 1704	"	1944	SL-44-C-G-011158	SL-44-C-011158
" 1507	"	"	SL- " -C-G-011159	SL-44-C-011159
" 1078	"	1945	SL-45-C-G-011043	SL-45-C-011043
" 1081	"	"	SL- " -C-G-011045	SL-45-C-011045
" 1727	"	"	SL-45-C-G-011094	SL-45-C-011094
" 1030	지.업.사	1945	SL-44-C-G-011019	SL-44-C-011019
" 1808	"	"	SL- " -C-G-011074	SL-44-C-011074
" 1467	"	1945	SL-45-C-G-011032	SL-45-C-011032
" 1231	"	1944	SL-44-C-G-011053	SL-44-C-011053
" 1714	"	"	SL- " -C-G-011081	SL-44-C-011081
" 1761	"	1943	SL-43-C-G-011126	SL-43-C-011126
" 1768	"	1953	SL-53-C-G-011133	SL-53-C-011133
" 1786	"	1953	SL- " -C-G-011148	" " " -011148
" 1861	"	1944	SL-44-C-G-011163	SL-44-C-011163
" 1774	"	1953	SL-53-C-G-011139	SL-53-C-011139
" 1721	"	1944	SL-44-C-G-011088	SL-44-C-011088
" 1420	"	1943	SL-43-C-G-011056	SL-43-C-011056
" 1602	"	1944	SL-44-C-G-011059	SL-44-C-011059
" 1765	"	1953	SL-53-C-G-011130	SL-53-C-011130
" 1789	"	1953	SL-53-C-G-011152	SL-53-C-011152
" 1733	"	1944	SL-44-C-G-011100	SL-44-C-011100
" 1758	"	1953	SL-53-C-G-011123	SL-53-C-011123
" 1751	"	1953	SL-53-C-G-011116	SL-53-C-011116
" 1776	"	"	SL- " -C-G-011141	SL-53-C-011141
" 1801	"	1944	SL-44-C-G-011156	SL-44-C-011156

309

계 26 대

5-5 66

236